

친애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

2008-2009 학년도에 귀하의 자녀는 1973년 장애인 재활법 제 504항에 의해 학교에서 보건 서비스 (예: 투약)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제 504항 편의제공 보건 및 교육 서비스 규정 지침에 따라 매년 새로운 허가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허가를 갱신하는 이유는 귀하의 자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및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갱신된 허가서는 가정의가 처방한 약을 자녀가 올바르게 복용하도록 하고 의료절차, 복용량, 시간, 부작용 및 기타 사항이 지난 1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또한 제공처에서 자녀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연례 정기 신체검사 및 캠프용 신체검사를 이맘때쯤 예정하고 계시니, 다음 학년도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자녀의 담당병원에 2009-2010 학년도의 적절한 양식 작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주치의/병원에서 첨부된 보건 서비스 및/또는 섹션 504 조정 양식 전체를 작성하여 서명한 것을 준비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약품 양식 왼쪽 상단에 자녀의 사진을 붙여 주십시오.

허가서는 마지막 수업일 이전에 자녀를 통해 학교에 제출하시거나 여름방학 동안에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

---

---

---

새 학년도 시작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을 2009년 8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